

중국 회사법상 외국기업의 상장기업 인수합병 제도

정보신청기관 : 현대기아자동차

I. 중국 인수합병의 발전과 현황

1. 중국 인수합병의 역사

중국에서의 최초의 기업합병은 1984년에 일어났다.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의 당시 바오딩 방직기계공장(保定紡織機械廠)은 바오딩 침직기재공장(保定針織器材廠)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병하였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기업합병 사례이다. 이후 합병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증권시장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 인수합병의 주요 발전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기단계(1990~1993년)

1990년 12월 1일, 선전(深圳)증권거래소가 개설되어 증권시장이 탄생함으로써, 상장회사

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 안정단계(1994~1997년)

이 시기의 최대 특징은 국유주와 법인주식의 양도가 활발했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 인수합병의 동기는 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둘째, 인수합병된 기업은 대체로 쇠퇴기 기업이거나 산업주기의 하락기에 있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수합병이 현금유동량이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우량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기회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지불방식은 주식분할이나 현금방식도 있었으나, 주로 자산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인수합병측은 인수가 마무리된 후 새로운 자산을 투입하고, 불

량자산은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 발전단계(1998~1999년)

이 시기는 중국 증권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상장회사들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합병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었다. 이 단계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투자가 점진적으로 상장회사로 집중되었으며, 주식을 통한 지배권 이전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불량자산만을 이전하는 형태가 발생하였고, 인수합병의 목적도 단순한 이윤추구의 측면을 넘어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자산의 유기적인 융합을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이 좀더 규범화되었으며, 인수합병의 범위도 국유기업이나 2급시장(secondary market, 유통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라. 신단계(1999년 이후)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이하 '중국 증권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수많은 제도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인수합병 시장도 점차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다.

2. 중국 기업 인수합병의 현황과 특징

중국 기업 인수합병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인수합병 규모의 대형화

중국에서 최초의 인수합병의 규모는 불과 백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 원) 이내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적으로도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3년까지 상하이, 우한(武漢), 청두(成都) 등 16개 도시에서 발생한 자산 이전은 60억 위안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 및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이치(一汽) 자동차가 선양(沈陽) 쩌이(金杯)의 51%의 지분을 인수할 때의 출자액은 단일건으로 5억 위안(한화 약 8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국유기업의 최종적인 지배권자는 정부로, 기업의 합병, 특히 국유기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정부가 최종적,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정부의 산업정책 조정의 일환인 경우가 많았다. 2001년 이후로 있었던 중국 민항(中國民航), 중국 전신(中國電信), 중국 석유화학(中國石油化學) 등의 대규모 인수합병 및 이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은 모두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 합병방식의 다양화

중국에서 초기에 발생했던 합병의 방식은 대

부분 피인수기업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출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기업의 발전과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주식인수, 브랜드 운영, 무상분할, 주식교환, 전환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식이 출현하였다. 이미 1993년 최초로 상장기업이 주식의 매수를 통하여 다른 상장기업을 합병하였던 이른바 ‘바오옌 분쟁(宝延之争)’¹⁾이 발생하였고, 1994년에는 국유기업주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최초의 사례²⁾가 발생하는 등 인수합병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라. 빈번한 우회상장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장기발전 전략 및 용이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최적의 방법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상장기업들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무형자산의 중시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무형자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브랜드, 기술, 관리능력, 문화 등의 무형자산은 기존의 유형자산들과 결합

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사인 하이얼(海爾)의 경우 1988년부터 1997년까지 20여 개 기업을 인수하였고,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하이얼의 브랜드, 기술 및 경험이 결합하면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바. 인수합병 동인의 다양화

중국에서 초기의 합병의 직접적 동인은 부실한 국유기업을 구제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있었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면서 인수합병의 동인도 다양화되어 우량자산의 매입, 경쟁력 제고, 우회상장, 타업종 진출 등 여러 가지 동인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³⁾

II. 중국 회사법상 일반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1. 중국 회사법상 인수합병의 개념과 특징

기업의 인수합병이란 M&A(merger and acquisition), 즉 인수와 합병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이



- 1) 1993년 9월 30일 바오안(宝安)이 앤중실업(延中失業)의 주식을 매수하여 합병한 사건으로, 이것은 중국 역사상 2급시장(유통시장)에서 인수합병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당시 앤중실업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주식을 유통시킨 회사 중 하나였으며, 절대적 지배주주가 없어 합병의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2) 1994년 4월 28일, 주하이 형통즈예(珠海恒通置業)가 링광실업(棱光实业)의 35.5%의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한 사례이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국유주식을 인수하여 합병한 사례이다.
- 3) 吴伟央, 刘燕, 公司并购法律事务, 法律出版社, 2007년, 12~15쪽.

하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은 합병에 대해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회사법 제173조)을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병의 의미와 동일하다. 인수에 관하여는 회사법에서 규정이 없고, 증권법 제85조의 “투자자는 요약인수, 협의인수 및 기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장기업을 인수(收购)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나 협의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장기업의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상장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상장기업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인수 요약을 발송하여야 한다”(증권법 제8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인수를 해당 기업의 30% 이상의 지분확보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수합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첫째, 인수합병은 회사간의 계약행위이다. 기업의 합병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닌 회사(법인)이다. 둘째, 기업의 합병은 기업간의 법정 합병이다. 기업은 법으로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합병계약을 체결하며, 법률에 규정된 등기수속을 경료함으로써 기업합병이 이루어진다. 셋째, 기업의 합병으로 합병에 참가하는 하나의 기업 혹은 각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어느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될 것인가는 각 사안

에 따라 다르며,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을 제외한 하나 이상의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된다.⁴⁾

2. 기업합병의 형식

중국 회사법은 기업합병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설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합의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에 참가한 회사들은 해산하는 형식이고, 흡수합병은 합병합의에 따라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해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

3. 기업합병의 절차

기업합병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 기업합병 합의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기업합병의 합의, 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은 기업의 형태, 합병 형식 등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① 인수 및 피인수기업의 명칭과 주소, ② 인수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 혹은 신설회사의



4) 叶林, 商法学原理与案例教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년, 263쪽.

명칭과 주소, ③ 인수 및 피인수기업의 자산상 황과 그 처리방법, ④ 각 기업의 채권채무현황 과 그 처리방법, ⑤ 존속하는 회사 혹은 신설회 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변동될 보유 주식총수, 주식의 종류 및 기타 사항, ⑥ 기타 쌍방이 필 요한 기타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인수합병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대차대조표 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목록은 기업이 보유 한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및 기타 모든 자산 의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 제 174조 전단).

다. 합병의 결의

회사의 합병은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 의사항이다. 이사회에서 기업합병 합의가 이루 어지면 기업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 사항으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기업합병의 법적 효력 이 발생하지 않으며,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 주는 보유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주식매수청구권, 회사 법 제75조 제2항)

라.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중국 회사법은 기업합 병의 결의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 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통지를 접수한 30일 이 내에, 통지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로 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회 사법 제174조 후단).

한편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규정을 살펴보 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합병 결의가 통과한 후 60일 내에 주식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 의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회사법 제75조 및 제143조 참조).⁵⁾

마. 합병의 실시와 등기

합병은 회사 등기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 으로 이에 상응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산 하는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고, 신설합병의 경 우 신설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합병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4. 기업합병의 법률효과

첫째, 기업합병이 발생하면 피인수기업의 법 인격이 소멸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5) 叶林, 商法学原理与案例教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년, 264쪽.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 관계는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다.

둘째, 원 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혹은 신설 회사의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전술).

셋째, 권리·의무 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모든 권리, 의무 관계는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로 포괄승계된다. 해산하는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모든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90조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합병 이후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통지를 그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고 통지 없이 그대로 채권과 채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소송상의 권리도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합병 전 회사가 진행하던 소송 및 중재 등의 권리도 승계한다.⁶⁾



6) 刘俊海, 公司法学, 北京大学出版社, 2008年, 314면.

Ⅲ. 중국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규정

1. 개관

모든 국가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는 경우, 특히 지면상 상장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자본의 중국회사 인수에 관한 중국 법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법률

외국기업이 중국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먼저 회사법, 증권법 및 <상장회사 합병 관리방법(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주식시장규칙(股票上市规则)>, <상장회사 대규모 자산의 인수, 매각, 교환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上市公司重大购买、出售、置换资产若干问题的通知)> 등의 일반법률,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상장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및 정책 규범으로 <외상투자자의 상장회사의 전략투자 관리방법(外商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方法)>, <상무부 사무청,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상장회사 국유주의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 양도에 관련한 신고절차에 관한 통지(商务部办公厅、国务院国有资产

监督管理委员会归案与上市公司国有股向外国投资者及外商投资企业转让申报程序有关问题的通知> 등이 있다. 또 외상투자에 관련한 특별 규정들이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임시규정(利用外资改则国有企业暂行规定)>,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합병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외국 자본의 중국기업 인수에 대한 원칙과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합병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외국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산업영역을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으로 나누어 규정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들 수 있다. '규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 합병에 관한 임시규정(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을 정식 입법한 것으로, 상무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국가 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공

동 명의의 부 및 국 령이다. 2008년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과 국무원 경영자집중 심사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이 시행되면서 법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2009년 6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총 7개장 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처음 발표되었던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은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행은 2007년에 발표된 것으로 최근 다시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근시일 내에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⁷⁾ 업종 분류에 따라 인수합병의 가능여부는 물론 그 지원과 대우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의 형식

'규정'은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이 아닌 중국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중국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여 중국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되는 주식인수합병(股权并购)과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기업간 합의를 통하여 중국기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외국



7)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샤오강(张晓强)은 인터뷰를 통하여 이번 개정의 주요 특징으로 6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① 개방영역 확대, ② 현행 10대 중점산업진흥정책과 결부하여 신기술, 신공예, 신재료, 신설비의 사용의 장려, 생산력의 과잉집중 방지, ③ 신에너지, 신재료, 생물의약, 정보산업 등 업종으로의 진출 장려, ④ 서비스업, 특히 현대서비스업으로의 진출 장려, ⑤ 기술혁신 지원, ⑥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다. 중국경제신문, 2010년 4월 14일 (http://finance.ce.cn/rolling/201004/14/t20100414_15694497.shtml).

투자자가 중국기업의 자산을 먼저 인수하고 그 자산을 이용하여 외상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산인수합병(资产并购)의 두 가지 형식이다(‘규정’ 제2조).

<중국에서의 외자의 인수합병 방식 분류⁸⁾>



2. 인수합병의 지불

가. 일반규정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식이나 자산 대금의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 영업허가를 받은 6개월 내에 60% 이상만 지불할 수 있으나, 1년 내에 전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수익은 실제 출자액을 기준으로 분배한다(‘규정’ 제16조 제1항).



8) 안유희, 중국 인수합병 제도 분석(4),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09년 9월, 1면.

나. 증자 및 주식발행합병의 지불

외국 투자자가 증자의 방식으로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유한회사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때까지 등록자본의 증가분의 20%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미납입액의 납입은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에 따르며, 다른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시 주주는 신주를 모두 매수해야 한다(‘규정’ 제16조 제2항).

다. 자산인수합병 방식의 지불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외국 투자자는 인수합병의 계약이나 설립한 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출자기한에 따른다.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중국기업을 인수한 후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출자액은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기한 내에 납입하고, 미납입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입한다(‘규정’ 제16조 제3항).

라. 외국자본 투자액이 25% 미만일 때의 지불기한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자본 투자액이 등록자본의 25% 이하인 경우, 투자자 지불수단이 현금인 경우는 영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3개월 내에, 투자자가 현물, 공업재산권 등일 경우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6개월 내에 출자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3. 채권·채무의 처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후 채권, 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식인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그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둘째,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자산을 매각한 중국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셋째, 제3자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외국 투자자와 중국기업 및 채권자가 채권과 채무의 처리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과 채무의 처리협의를 관련기관의 심사와 기준을 거쳐야 한다.

4. 행정심사

가. 심사기관과 권한

중국에서 인수합병의 심사는 중앙, 주로 중국정부 상무부의 심사와 지방정부 상무주관위원의 심사로 나뉜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유명상표(驰名商标)나 ‘노자호(老字号, Old Chinese Trademarks)’⁹⁾ 상표권을 가진 회사를 합병할 때

에도 당사자의 신고 및 상무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규정’ 제12조). 이는 유명상표와 ‘노자호’의 경우 대부분 중국의 전통문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청인과 신고의무인

‘규정’은 관련 내용의 신고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국 투자자가 신고의무를 지는지 중국기업이 신고의무를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규정’은 통일적으로 ‘투자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바, 회사의 형태에 따라 외국 및 중국 기업의 공동의무 혹은 외국 투자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서류

주식인수합병의 경우, ‘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피인수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 합병에 동의한다는 모든 사원의 결의, 주식회사인 경우 합병에 동의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 ② 외상투자기업으로 회사형태 변경 신청서
- ③ 합병 후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회사정관
- ④ 외국 투자자가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협의서



9) 중국 정부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문상점에게 부여하는 등록상표이다.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전통 음식, 약품, 공예품, 의류 등 전통문화와 연관이 있다.

- ⑤ 피인수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심사보고
- ⑥ 공증 받은 외국 투자자의 신분증명 혹은 등록증 및 자산, 신용증명 문서
- ⑦ 피인수기업의 투자기업에 대한 설명
- ⑧ 피인수기업 및 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분)
- ⑨ 피인수기업의 직원처리 계획
- ⑩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서류¹⁰⁾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기업의 재산권을 소유한 개인 혹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자산매각 결의
- ②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 ③ 설립할 회사의 계약서 및 회사정관
- ④ 설립할 회사와 중국기업간의 자산매매 협의 혹은 외국투자자가 서명한 자산매입 협의회서
- ⑤ 피인수기업의 정관, 영업허가증(부분)
- ⑥ 피인수기업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하였음에 대한 설명 및 채권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 ⑦ 공증 받은 외국 투자자의 신분증명 혹은 등록증 및 자산, 신용증명 문서
- ⑧ 피인수기업의 직원처리 계획

- ⑨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이 외에도 다른 행정법규나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5. 등기

가. 등기기관

외국투자자가 중국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그 비준증서를 근거로 공상등기기관에 공상등기를 하며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외환관리부문에 외환계좌를 신청하고 외환등기를 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중앙정부 및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며, 등기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나 수권받은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이다(‘규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면, 피인수기업은 합병의 결과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원 등기기관이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한 10일 이내에 관할권 있는 등기기관으로 이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한다.



10) ‘규정’ 제13조는 채권, 채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피인수기업의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특별한 관계, 즉 두 기업이 동일한 지배주주하에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한 규정이다.

나. 등기신청인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신청인은 외국 투자자이며, 주식인수합병의 경우 신청인은 피인수기업인 중국기업이다.

다. 등기신청의 기한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부받은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은 30일 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정’ 제26조, 제34조, 제35조 등)

주식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등기기관의 관할권이 없을 때 1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등기의 기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자산인수합병과 동일하게 30일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라. 등기신청 서류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일반적인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와 동일하나, 주식인수합병에 대하여는 ‘규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주식인수합병의 등기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변경등기 신청서
- ② 외국 투자자가 중국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협의서

- ③ 수정한 회사 정관 혹은 정관 수정계획안과 법률에 근거한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 ④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⑤ 외국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증명 혹은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 ⑥ 수정 후의 이사회 명단, 신임 이사의 성명, 주소 및 직위에 관한 문서
- ⑦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문서와 증명서류

6. 인수합병 완료 후의 정책

가. 일반규정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 자본이 등록자본의 25% 이상 되어야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외국자본이 25% 미만인 경우는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하지 않으며, 심사기관은 “외국자본이 25% 미만”이 명시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부하며, 등기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 역시 “외국자본이 25% 미만”이 명시된 영업허가증과 외환등기증을 교부한다.

중국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거나, 인수합병 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자본이 등록자



11) 罗文志等, 上市公司并购法律事务, 法律出版社, 2007년, 122쪽.

본의 25%가 되는 경우 중에서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해외자본이 25% 이상이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규정’ 제9조).

나. 투자총액의 제한

‘규정’ 제19조는 등록자본에 따라 투자총액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① 등록자본이 2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의 10/7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등록자본이 21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등록자본이 500만 달러 이상 1,2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등록자본이 1,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7. 반독점심사

가. 반독점심사 기관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외국기업은 사안에 따라 반독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한다.

나. 반독점심사 제도

‘규정’ 제5장은 반독점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51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① 합병의 일방이 당해연도 중국시장에서 영업액이 인민폐 15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② 1년 내 관련업종의 기업을 10개 이상 인수한 경우
- ③ 합병의 일방이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20%에 이르는 경우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일방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25%에 이르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쟁기업이나 관련부문 혹은 업계 협회가 청구하거나, 상무부 혹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외국 투자자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합병으로 인하여 과도한 집중이 발생하거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병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내에 관련기관을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업계 이해관계인과의 공청회를 거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규정’ 제52조).

다. 반독점심사 제출서류

반독점심사시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제출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²⁾

- ① 성명(명칭), 국적, 업종, 등록자본, 회계자료 등 합병 당사자에 관한 기본사항
- ② 합병의 상황, 합병 계약서 및 기타 협의 등의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③ 당사자의 영업액, 시장점유율 및 해당 업계의 상황에 대한 소개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관한 설명
- ⑤ 만일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시, 이에 대한 소명

라. 해외합병 반독점심사

해외합병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본국의 주관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상무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합병계획을 심사받아야 한다.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합병이 중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여 합병의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규정’ 제53조).

- ① 해외합병의 일방이 인민폐 3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중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 ② 해외합병의 일방이 당해연도 중국시장에서 영업액이 15억 위안 이상인 경우
- ③ 해외합병의 일방과 그 관련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에 이르는 경우
- ④ 해외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일방과 그 관

련기업이 중국시장 점유율이 25%에 이르는 경우

- ⑤ 해외합병으로 인하여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이 15개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규정에 따라 반독점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외에도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2009년 코카콜라의 후이위엔(汇源) 인수합병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 중국에서의 합병은 정부의 선택이 관건이 되며, 특히 반독점법은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 반독점심사의 면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는 경우, ②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③ 선진기술의 도입, 고급인력의 흡수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④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독점심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문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2) 罗文志等, 上市公司并购法律事务, 法律出版社, 2007년, 125쪽.

IV. 소결

중국 진출 초기 기업들은 중국의 법제를 무시하고 '관시(关系)' 등 비공식적 방법을 통하여 진출을 시도하여, 비록 시장진입에 성공하였다 고 하여도 경영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법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비교적 안정된 법제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중국의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중국 진출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인수합병에 관하여서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많고, 특히 모든 규정을 넘어서는 중국 정부의 자

의적 판단이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증권시장도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관련 법제들도 많이 규범화되어 과거와 비교하여 그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본은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인 식

(중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